

이 보도자료는 배포 즉시 보도하여 주시고, 공개되는 범죄사실은 재판을 통하여 확정된 사실이 아님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

서울북부지방검찰청
전문공보관 인권보호관 박광현
전화 02-713-4866

보도자료
2023. 11. 28.(화)

제 목

보호관찰관 상대 강제추행 허위고소 등 성범죄 관련 무고사범 7명 입건하여 기소

공소제기 후 공개의 요건 및 범위

- ☑ 피고인, 죄명, 공소사실 요지, 공소제기 일시, 공소제기 방식, 수경찰위, 수사상황, 범행경과 및 수사의 의의 등 (제11조 제1항)
- ☑ 공판에서 해당 내용이 현출된 경우(제11조 제2항 제1호) 제7조 제2호 내지 제6호의 공개금지정보
- ☑ 제9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6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고 미리 공개가 필요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어 소속 검찰청의 장의 승인이 있는 경우(제11조 제2항 제2호) 제7조 제2호 내지 제6호의 공개금지정보

- 서울북부지검 여성·아동범죄수사부(부장검사 구미옥)는 '23. 5.경부터 '23. 11. 경까지 약 7개월에 걸쳐 경찰의 성폭력·가정폭력 사건의 '혐의없음' 불송치 등 사건을 철저히 수사하여 무고사범 총 7명을 입건, 불구속 기소하였음
- 검찰은 경찰에서 혐의없음 등으로 종결된 성폭력 등 사건 중 객관적 물적 증거에 의해 무고사실이 명백히 의심되는 사건을 전면 재수사하여, ▲ 담당 보호관찰관을 강제추행으로 허위 고소한 사례 ▲ 사실혼 배우자를 특수상해로 허위 신고하여 위 배우자가 현행범인 체포된 후 구속영장까지 신청된 사례 ▲ 성범죄 가해자가 피해자를 무고로 허위 고소한 사례 등 무고사범 7명을 밝혀 내 기소하였음
 - 특히 성범죄 신고에 대한 무고 수사는 ▲ 진실된 신고인 경우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 가능성과 ▲ 허위 신고일 경우 피무고자에게 치명적인 피해를 주는 중대범죄라는 양면성이 있어 객관적 증거 확보에 주력하는 등 신중하게 수사하였음
- 검찰은 앞으로도 성폭력·가정폭력사범 등을 엄단하여 약자를 보호함과 동시에 이를 악용하여 허위신고하는 무고사범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응하여 국민이 신뢰하는 사법질서가 확립될 수 있도록 하겠음

● 자신을 담당하는 보호관찰관을 강제추행으로 허위고소한 사례

- 강제추행 등으로 보호관찰을 받던 피고인 A가 '담당 보호관찰관으로부터 옷소매 안으로 손을 넣어 4회에 걸쳐 강제추행을 당하였다'는 취지로 허위 고소장 제출하여 무고
- 검찰은 경찰이 불송치한 위 사건 기록을 면밀히 검토한 후, 피고인 주장과 상반되는 현장 CCTV 영상을 확보하여 무고 혐의로 입건 후 기소
- ※ 위 보호관찰관은 장기간 내부 감사 및 수사로 공직을 박탈당할 뻔하였으며, '직접 무고로 고소하고 싶었으나 증거수집이 쉽지 않아 포기하였는데, 검찰에서 직접 무고로 처벌해 주어 감사하다'는 감사편지를 검찰청에 보내왔음

● 내연남과 합의 하에 성관계 후 남편에게 발각되자 내연남으로부터 강간당했다고 허위 고소한 사례

- 피고인 B는 내연관계를 남편에게 발각당하자 내연남과 합의하에 성관계 하였음에도 강간을 당하였다고 허위 고소장을 제출하여 무고
- 경찰이 불송치한 위 강간 사건을 직접 수사하면서 대화 녹취록 등 증거를 확보하여 B의 무고 혐의를 밝혀내 기소

● 자해를 하고도 사실혼 배우자를 특수상해로 허위 신고하여, 위 배우자가 현행범인체포되어 구속영장까지 신청되도록 한 사례

- 피고인 C는 사실혼 배우자와 금전 문제로 다투던 중 칼로 자해(自害) 후 112에 '사실혼 배우자가 자신을 칼로 찔렀다'는 취지로 허위신고했고, 경찰이 위 배우자를 특수상해 현행범인으로 체포 후 구속영장을 신청
- 검찰은 허위신고에 근거한 위 구속영장 신청에 대해서는 범죄혐의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여 기각하였고, 이후 경찰은 추가 수사한 결과 위 사실혼 배우자의 특수상해 사건을 혐의없음 의견으로 송치
- 검사는 보완수사 과정에서 상해 부위 사진에 대한 국과수 감정, 피고인 C와 피무고자 자녀와의 녹취록 분석을 통해 자해임을 밝혀 무고로 기소

● 성범죄 가해자가 피해자를 무고로 맞고소한 2차 가해를 밝혀낸 사례

- 강제추행 사건의 피의자인 피고인 D가 자신의 수사에 유리하도록 '피해자가 강제추행으로 허위 고소하여 나를 무고하였다'는 취지로 고소하였고, 위 무고 사건을 경찰이 불송치하자 검찰에 이의신청 후 송치
- 검찰은 피무고자(성범죄 피해자)의 다이어리에 대한 문서 감정 등 증거를 확보하여 피고인 D를 무고로 입건하여 기소하고 피무고자의 결백함을 밝힘

※ 피고인이 강제추행으로 법정 구속된 점, 고소 취소한 점 등을 참작하여 약식기소

II 무고사범 수사의 의의

- 무고는 고의로 허위 사실을 수사기관에 신고하여 죄가 없는 사람으로 하여금 수사를 받고 처벌받을 위험에 빠뜨리는 국가 사법질서의 근간을 뒤흔드는 중대 범죄임
- 특히 성범죄 무고의 경우, 피무고자는 처벌을 받게 되는 경우 뿐만 아니라 결국 무혐의 처분 내지 무죄 판결을 받게 되더라도 그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 성범죄자로 낙인을 찍혀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입게 되므로 이러한 무고사범을 철저히 수사하여 엄단할 필요성이 있음
- 반면, 성범죄 피해자 등에 대한 무고 수사는 자칫 2차 피해를 초래할 우려가 있어 신중할 필요가 있으므로, 사경이 불송치하거나 검찰에서 혐의없음 처분하는 등 수사가 종료된 사건 중 객관적 물적 증거에 비추어 허위 신고가 충분히 의심되는 사건들에 대하여 수사개시하고, 진술증거에만 의존하지 않고 최대한 객관적 증거를 확보하여 혐의를 명백히 한 후 기소함
- 경찰이 불송치(혐의없음)로 종결한 성폭력·가정폭력 사건을 검찰이 직접 수사하여 허위 고소·신고임을 끝까지 밝혀냄으로써 피무고자들의 억울함을 풀어주고, 무고자들에게 피무고자들로 하여금 장기간의 수사로 고통받게 한 점과 수사기관의 수사력이 낭비되도록 한 책임을 물었음

※ '21. 1. 『검찰청법』이 개정되면서 검사는 경찰에서 불송치 사건에 대한 무고수사를 개시할 수 없었으나, '22. 9. 10. 『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』 개정으로 '검사가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중요범죄'에 『무고』 등 사법질서 방해범죄가 포함되면서 가능하게 됨

Ⅲ

향후 계획

- '무고'는 사법질서를 저해하는 것은 물론 선량한 시민으로 하여금 억울하게 수사기관의 수사를 받도록 하고 처벌까지 받을 수 있는 상황에 처하게 하는 등 악질적인 범죄임
- 특히 '성범죄 무고'의 경우 피무고자는 자신의 결백을 스스로 밝히는 것이 쉽지 않고, 성범죄자에 대한 사회의 부정적인 평가가 고조되고 있어 회복할 수 없는 심각한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높아 **엄단할 필요가 있음**
- 검찰은 앞으로도 실체적 진실을 왜곡·은폐하고 억울한 피해자를 양산하는 무고사범을 엄단하여 무고죄는 반드시 처벌받는다는 인식이 정착되도록 하여, **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사법질서가 확립될 수 있도록**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음 ☑

<별첨>

<무고 사건 요지 >

연번	피고인	공소사실의 요지	처분 (일자)	비고
1	A (남, 38세)	자신을 담당하는 보호관찰관이 수행한 사실이 없음에도, 4회에 걸쳐 옷소매 안으로 손을 넣어 강제로 수행하였다는 취지로 허위 고소하여 무고	약식 기소 (23. 8. 31.)	경찰 불송치
2	B (여, 43세)	불륜 상대방과 합의하에 성관계를 하였음에도 남편에게 발각되자 강간을 당하였다는 취지로 허위고소하여 무고	약식 기소 (23. 9. 19.)	경찰 불송치
3	C (남, 55세)	사실혼 배우자의 앞에서 칼로 자해를 하였음에도, 112에 '사실혼 배우자가 자신을 칼로 찔렀다'는 취지로 허위신고하여 무고	불구속 구공판 (23. 10. 26.)	경찰 혐의없음 송치
4	D (남, 49세)	강제추행으로 고소를 당하자 자신의 수사에 유리한 사정을 만들기 위해 '피무고자(피해자)가 허위로 강제추행으로 고소하였다'는 취지로 허위고소하여 무고	약식 기소 (23. 8. 4.)	경찰 불송치
5	E (여, 29세)	성매수남과 20만원을 받고 성관계를 하였음에도, 성폭행을 당하였다는 취지로 112에 허위신고하여 무고	불구속 구공판 (23. 5. 19.)	경찰 불송치
6	F (남, 33세)	동거하는 여자친구에게 자신의 카드를 사용하도록 허락하였음에도 헤어진 후 화가 나 여자친구를 절도로 신고하여 무고	약식 기소 (23. 5. 24.)	경찰 불송치
7	G (여, 38세)	성매매를 위해 만난 남성과 화대 환불문제로 다투다가 강간치상 등으로 허위고소하고, 금전문제로 갈등을 빚고 있던 전 연인에 대해서는 '위 성매수남에게 본인을 강간하도록 교사하였다'는 취지로 허위고소하여 각각 무고	불구속 구공판 (23. 11. 28.)	경찰 불송치